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제3차 전체회의(2024. 8. 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제출)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1. 등기소 관할의 확대

□ 개정안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등기 및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31조, 제64조 및 제72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관할 등기소) (생략) <u><신설></u>	제4조(관할 등기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	제26조(신청의 각하) ----- ----- ----- -----.

현행	개정안
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u>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u> 12. ~ 17. (생략) <u>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 -----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2. ~ 17. (현행과 같음) <u>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u>

현행	개정안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생략) ② <u>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u> ③ (생략)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u>등기관은 제63조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u> ② <u>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u>	<u>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u>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현행	개정안
<u>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u> ③ <u>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u> <u>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u> <u>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u>	③ ----- ----- ----- ----- ---- <u>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u> <u>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u>	

□ 현행법에서는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제4조¹⁾, 제31조),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 서로 관할 등기소가 다를 때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제64조, 제72조).

○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신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기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 각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제31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이

1)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있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면 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제63조 및 제64조).

-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 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면 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제71조 및 제72조).

- 개정안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르지만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는 취지로²⁾, 이를 통하여 등기사무의

2) 안 제26조는 신청의 각하사유 중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등기소의 관할을 확대하면서 일정한 등기소를 경유하는 현행 규정(제55조제1항, 제63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른 개정사항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제2항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등기소의 관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안 제4조제2항은 관할 확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31조, 제64조 및 제72조에 관할이 확대되는 개별적 규정을 둬으로써 관할이 확대되는 사건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유추 가능할 것으로 보임.³⁾
- 영업소 이전등기 및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 등기소의 관할을 확대하여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각 관할 등기소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등기사무 처리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안 제56조는 본점 이전등기절차 간소화 관련 규정이자 관할 확대 규정으로서, 본점 이전으로 인한 등기 역시 관련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할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안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등기사무의 정지 요건 명시

-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4)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 명령 및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행	개정안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지사유나 등기사무에 필요한 처분명령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등기사무 정지사유를 구체화하고 등기사무에 필요한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처분명령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상업등기는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 (제2조제1호)로서 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등기사무의 정지사유를 법률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등기사무에 필요한 처분명령권은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 임시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사무의 정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 개정안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에 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 ----- -----.
1. <u>신청인</u>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u>방문신청: 신청인</u> ----- ----- ----- ----- ----- ----- ----- ----- ----- -----.
2. <u>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u>	2. <u>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u> [이동통신단말장

현행	개정안
<u>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u>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u> ③·④ (생략)	<u>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 회사에 대한 등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 가능함(법원행정처고시 제2008-5호⁵⁾).

5) ○ 법원행정처고시 제2008-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

□ 개정안에서 “전자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등기신청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신청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전자신청의 등기유형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행업무 등 민간서비스(모바일뱅킹) 및 행정민원서비스(정부24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사무의 경우에도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등기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등기소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 : 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설립등기, 새로운 대표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및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 : 2008년 10월 13일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전자신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6) 대법원은 법률에서 전자신청의 등기유형을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되, 현재 시점에서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여 전자신청을 허용하기에는 제도적·시스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 확대되면 대법원규칙이나 예규 개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이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임.

참고로 「상업등기법」 제91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법원규칙으로의 일반적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4. 그 밖의 개정사항

□ 개정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753호)에서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이전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 등기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관할법원을 명확히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3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u>영업소</u>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관할 등기소) ① ----- ----- <u>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u> ----- ----- ----- -----.
<u><신설></u>	<u>② (생략)</u>
제25조(인감의 제출) ①·② (생략)	제25조(인감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u>	<u><삭제></u>

현행	개정안
<u>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u> 3. ~ 6. (생략) <u>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u> <u>전등기</u> 8. (생략) <u>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u> <u>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u> <u>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u> <u>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u> <u>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u> <u>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u> <u>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u> <u>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u> <u>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u> <u>소를 거쳐야 한다.</u> <u>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u> <u>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u> <u>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u> <u>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u> <u>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u> <u>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u> <u>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u> <u>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u>	3.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현행과 같음) <u>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u> <u>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u> <u>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u> <u>일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u> <u>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u> <u>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u> <u>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u> <u>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u> <u>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u> <u>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u> <u>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u> <u>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u>

현행	개정안
<u>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u> <u>② 구분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u> <u>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분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u>	<u>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u> <u>제57조(지점설치·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u> <u>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u> <u>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u>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생략)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 ----- ----- ----- -----. <u><후단 삭제></u>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 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	----- -----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

현행	개정안
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으로 본다. <삭 제>

현행	개정안
<u>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u>관할 지방법원에</u>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등기소에</u>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생략)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u>이의신청서</u>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 <u>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u>-----. 제83조(이의신청 방법) ----- ----- ----- <u>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u>-----.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u>-----. ③ -----

현행	개정안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u>이의신청서</u>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 <u>이의신청서</u> 또는 <u>이의신청정보</u> ----- ----- -----. ----- ----- ----- ----- ----- -----.

□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지점 등기부 폐지를 통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본점 이전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등기의 연속성 제고 및 신청인의 부담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외국 회사 등기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이 법의 정비 역시 법체계상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제2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제70조, 제73조 및 제81조를 들 수 있음.

○ 본점 이전등기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4조부터 제56까지를, 외국회사 등기제도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4조를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이의신청 관할의 명확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안 제82조, 제83조 및 제85조)과 관련하여,
① 등기사무를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담당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안 제4조제2항)에는 이의신청 관할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② 등기신청 방법으로 전자신청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승원위원)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

-----.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u>기를 신청할 수 있다.</u> <u>1. 촉탁에 따른 등</u> <u>기</u> <u>2. 회사의 본점과</u> <u>지점 소재지에서</u> <u>공통으로 등기할</u> <u>사항(이하 “본·</u> <u>지점 공통 등기</u> <u>사항”이라 한다)</u> <u>에 대한 지점 소</u> <u>재지에서의 등기</u> ③·④ (생략)	<u>등기소에 제출하는</u> <u>방법으로 등기를</u> <u>신청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업소”를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

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1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를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으로 본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 중 “관할 지방법원”을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3조 중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제14호·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u>영업소 소재지</u> 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u><신 설></u>	제4조(관할 등기소) ① ----- ----- <u>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u>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u>발생한 경우</u>
	<u>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u>
	<u>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 ----- ----- --.
1. <u>신청인</u>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	1. <u>방문신청: 신청인</u> ----- ----- ----- ----- ----- ----- -----

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
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
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
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
(이하 “본·지점 공통 등기
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
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④ (생략)

-----.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
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
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
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
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
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인감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 6. (생략)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 전등기

8. (생략)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제25조(인감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제26조(신청의 각하) -----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2. ~ 17. (생략)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
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
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
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
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
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
다.

12. ~ 17. (현행과 같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
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
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
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
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
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
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
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
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
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
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
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
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
야 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
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
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
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
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
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
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
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
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
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
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
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
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
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

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지점설치·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

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
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
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
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
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
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
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
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

<삭 제>

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
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
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
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
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의 신청) ① (생략)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
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
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
기사항) ①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
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
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
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
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
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
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생
략)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
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
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
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
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현
행과 같음)

② -----

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

<삭제>

③ -----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
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
수한 것으로 본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
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
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
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
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
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
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

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
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
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
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의 직권말소) ① 본·지점 공
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
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
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
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
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
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
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으로 본
다.

<삭 제>

<u>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 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는 <u>관할 지방법원에</u>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 -----<u>그 결정 또는 처분을</u> <u>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u> <u>하 “관할 지방법원” 이라 한</u> <u>다)</u>-----.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 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등기소에</u> <u>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u> <u>로 한다.</u>	제83조(이의신청 방법) ----- ----- ----- -----<u>결정 또는 처분</u> <u>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u> <u>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u> <u>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u> <u>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u>-----.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생 략)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 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u>이</u> <u>의신청서를</u>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 내에 의견을 붙여 <u>이의신청서</u>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이</u> <u>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u>-- -----. ③ ----- ----- -----<u>이의신청서</u>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u>또는 이의신청정보</u>----- ----- -----. ----- ----- ----- ----- ----- -----.
---	--